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군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에 징계권자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제한사유로 정하는 한편,

군무원이 군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무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행위 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른바 “軍내 갑질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 통보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징계감경 제한사유로 규정(안 제115조의2제2항제19호 신설)

- 1) 인사혁신처 인사감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4호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를 징계감경 제한사유로 정하고
있음에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상의 징계감경 제한사유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2) 「군인 징계령」 제20조제2항제19호의 징계감경 제한사유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당 제한사유를 신설함

나.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통보 안내의무를 구체화(안 제116조3제
1항)

- 1)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통보 안내의무의 요건을 「군무원인사
법 시행령」에 별도로 정하지 않고, 「군무원인사법」상 징계처분
결과통보의무의 요건을 인용하여 상호 일치시킴
- 2)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안내의무를 면제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다.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 국방부령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도록 명시(안 제116조3제2항 신설)

라. 군내 갑질행위의 행위태양을 구체화(안 제116조3제5항 신설)

-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
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를 군내 갑질행위로 규정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

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위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2) 안 제115조2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군내 갑질행위로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의2제2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기관·단체의 직원

1)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기관(해당 부대·기관에 소속된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부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부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

을 말한다)

제116조의3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징계처분”으로, “결과를 통보받을”을 “사유가 법 제4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등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계권자가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40조제6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15조의2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행위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5조의2(징계감경) ① (생략)	제115조의2(징계감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② ----- ----- -----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u><신설></u>	19. <u>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u> <u>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u> <u>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u> <u>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u> <u>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u> <u>화시키는 행위</u> <u>가. 다른 공무원</u> <u>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부대·기관·단체의</u> <u>직원</u> 1) <u>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u> <u>된 부대·기관(해당 부대</u> <u>·기관에 소속된 부대·</u> <u>기관을 포함한다)</u> 2)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u> <u>한 법률</u> 」 제4조제1항에 <u>따른 공공기관 중 1)의</u>

	<u>부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u>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부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116조의3(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조에서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116조의3(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① ----- -- 징계처분 ----- ----- ----- ----- ----- ----- ----- 사유 가 법 제40조제6항 각 호의 어

안내해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② · ③ (생 략)

<신 설>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등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징계권자가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법 제40조제6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15조의2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행위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연 락 처	(02) 748 - 6818